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1년 12월 22일

나. 회부일자 : 2001년 12월 24일

다. 상정 및 회부일자 :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01. 12.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가.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 서구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 (2001. 7. 31) 되어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동별, 법정 동을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맞게 개정(안 제4로 별표 1)
- 주민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현재 가축사육이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추가 (안 제4조 별표 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건강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 시설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제외 (안 제4조 제1항 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근수)

- 본 조례 개정안은 상기 조례에서 규정한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2001년 7월 31일 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맞게 행정구역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가축사육이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주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을 보전키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예외 지역으로 공공체육시설 내 승마장을 신설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 시설의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 동법 제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된 공공체육시설 내의 승마장은 주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므로 예외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8. 기타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조례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조례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내 승마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주광역시서구가축사육제한지역

동 별	법정동	제한구역	비 고
양 동	양 동	전 지역	
양 3 동	양 동	전 지역	
농성 1동	농성동	전 지역	
농성 2동	농성동	전 지역	
광천동	광천동	전 지역	
유 덕 동	유촌동	전 지역	
	쌍촌동	전 지역	
	덕흥동	제5통 제외한 전지역	
	치평동	전 지역	
	내방동	전 지역	
상무 1동	쌍촌동	전 지역	
	치평동	전 지역	
상무 2동	쌍촌동	전 지역	
	치평동	전 지역	
화정 1동	화정동	전 지역	
	내방동	전 지역	
화정 2동	화정동	전 지역	
화정 3동	화정동	전 지역	
화정 4동	화정동	전 지역	
서 창 동	세하동		전지역 가축사육 가능
	용두동		전지역 가축사육 가능
	서창동		전지역 가축사육 가능
	벽진동		전지역 가축사육 가능
	마록동	제22통 제외한 전지역	
	매월동		전지역 가축사육 가능
금호·풍암동	금호동	제1통 제외한 전지역	
	풍암동	전 지역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가축사육의 제한)①(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신설〉</p>	<p>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내 승마장</p>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별표 1)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현 행				개 정 안			
동 별	법 정 동	제한구역	비 고	동 별	법 정 동	제한구역	비 고
양 1 동	양 동	전 지역		양 동	양동	전 지역	
양 2 동	양 동	"		(삭제)	(삭제)	(삭제)	
양 3 동	양 동	"		(현행과 같음)			
농성1동	농성동	"		(")			
농성2동	농성동	"		(")			
광천동	광천동	"		(")			
유덕동	유촌·쌍촌동	"		유덕동	유촌동 쌍촌동	전 지역 전 지역	
	덕흥동	제5통 4반 제외한 전 지역			덕흥동	제5통 제외한 전 지역	
	치평동	제6통 4반 제외한 전 지역			치평동	전 지역	
	내방동	전지역			내방동	"	
상무1동	쌍촌동	"		상무1동	쌍촌동	"	
	치평동	"			치평동	"	
상무2동	쌍촌동	"		상무2동	쌍촌동 치평동	전 지역 전 지역	
화정1동	화정동			화정1동	화정동	"	
	내방동				내방동	"	
화정2동	주월동			화정2동	(삭제)	(삭제)	
	화정동				화정동	전 지역	
화정3동	화정동			(현행과 같음)			
화정4동	화정동			(")			
서창동	세하동		전 지역 가축사육가 능	서창동	세하동		전 지역 가축사육 가능
	용두동		"		용두동		"
	서창동		"		서창동		"
	벽진동		"		벽진동		"
	마룩동	제22통 제외한 전 지역			마룩동	제22통 제외한 전 지역	
	금호동	제24통 제외한 전 지역			매월동		"
	풍암동	전 지역		금 호 풍암동	금호동	제1통 제외한 전 지역	
	매월동		"		풍암동	전 지역	